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3. 15.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9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도 19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 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2조)
-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업장생활폐기물(현행 다량폐기물)의 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사업장용,특수 및 공공용봉투에서 생활폐기물용,사업장용,특수용 및 공공용봉투로 변경함(안 제15조)
-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를 20% 인상함(안 제27조 별표5)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유재한)

◇ 개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이 95. 8. 4.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96.1.19 일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규칙이 96.2.5. 일 개정됨에 따라 당구의 폐기물관리조례도 이 법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 우리구 조례는 전문 35조로 되어있으나 개정되는 조례는 6장 40조와 부칙3조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첫째 제1장 총칙

제3조(폐기물관할구역) 폐기물을 자치구경계가 하천 · 공원 · 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을때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접자치구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현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는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할때 구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또 5항에는 조정할 때에도 구의회에 통보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의거 자치구조례 제4조(자치구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에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며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에 협조해야 하는 등 의무이행의 규정이 있으며, 자치구는 자치구관할 구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계획등을 철저히 수립 수집 · 처리운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 운반 · 처리

자치구조례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치구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조례안제8조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관급규격봉투를 관할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그 용기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품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11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배출업자가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보관 또는 배출하는 방법을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하고, 사업장에서의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이나 방법(종량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자치구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 자치구 구청장이 폐기물 수집 · 운반방법등은 폐기물처리업의 지침서와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 업자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및 폐기물처리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요금과정 등이 적정한가 등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조례안 제14조에서부터 제 조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와 규격봉투 종류와 규격봉투의 제작과 색상·재질 등 봉투의 공급 및 구입 판매인 및 판매소의 지정과 해제 규격봉투의 대금의 수납 등 가격결정 및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은 종량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는 대형폐기물수수료요율에 대한 근거 별도로 규정 하였으며 제25조에서 제30조는 수수료의 세입처리에 대하여 제26조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규격봉투대금에 대한 규정이며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의 감면이나 주민이 이주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5장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조례안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등의 규정을 만들어 불이행자에 대한 법 제63조 규정을 적용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재를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므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장표를 비치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사료됩니다.

여섯째 제6장 보 칙

마지막으로 제37조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 審查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
------------	-----

제출년월일 : 1997. 2.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유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9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도 1996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자

- 폐기물 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함 (안 제2조)
-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업장생활폐기물(현행 다량폐기물)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사업장용, 특수 및 공공용봉투에서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용, 특수용 및 공공용봉투로 변경함 (안 제 15조)
-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를 20%인상함 (안 제27조 별표 5)

3. 참 고 사 항

-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동조례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이견없음.
-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자치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구민의 책무) ①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제 6 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 또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폐기물광역 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 7 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 8 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둑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 사용
2.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제나 플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
3. 재활용 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
4.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5. 기타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등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동당 건축 면적당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0 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 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제 11 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 12 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 상태 등을 년2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 13 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과징금의 사용은 영 제12조에 규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 14 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 15 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사업장용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③사업장용규격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 또는 사업장용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기타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⑤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 16 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공공용봉투는 짙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 17 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인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 및 특수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 20 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21 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기타 행정 지시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 24 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

②동장은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제 25 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 26 조(종량제 수수료) ①규격봉투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로 구성한다.

②규격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한다.

제 27 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연타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 28 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또는 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 29 조(수수료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등) ①수수료등의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 징수한다.

②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제 30 조(가산금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등포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31 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 32 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 63조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이 제3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OCR 처리용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부과 ·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 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 35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과태료수납부 비치 ·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 37 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8 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39 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규격봉투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 되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농약병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류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페스티로폼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파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페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 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 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별표 2)

규격봉투가격(제1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제작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5ℓ		0	5	80
	10ℓ		0	10	160
	20ℓ		0	20	320
	30ℓ		0	29	480
	50ℓ		0	48	800
	75ℓ		0	72	1,200
	100ℓ		0	97	1,600
사업장용 규격봉투	50ℓ		254	0	1,070
	75ℓ		382	0	1,600
	100ℓ		507	0	2,140
특수규격봉투	50ℓ			180	2,430

비고 : 사업장용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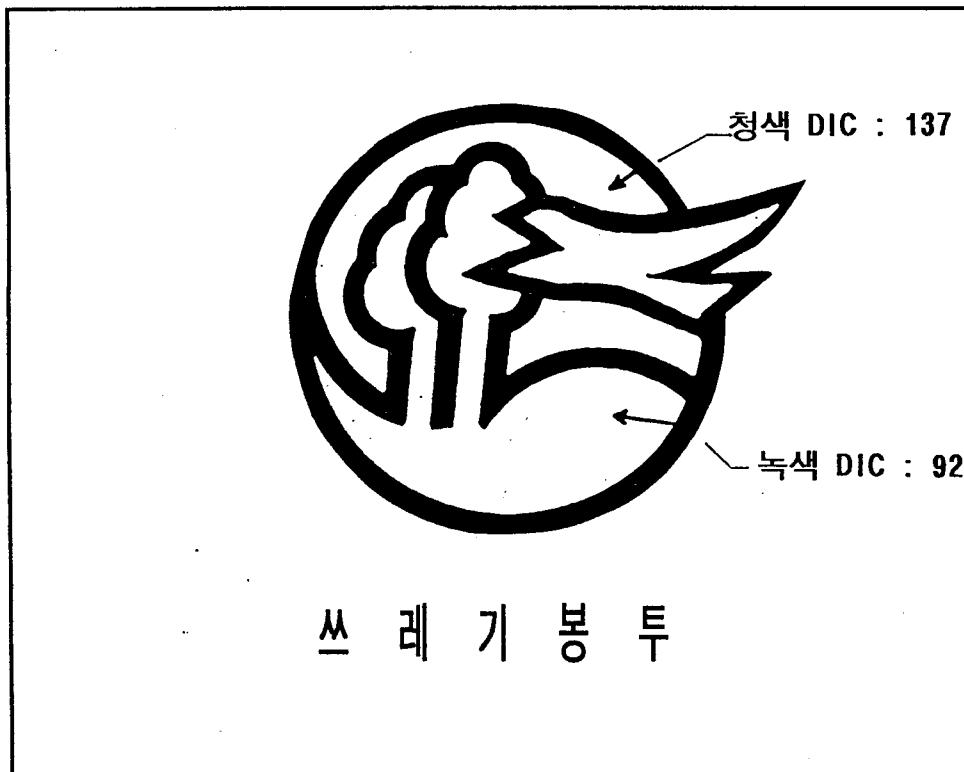
(별표 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용량(l)	용도
5	생활폐기물용
1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기타생활폐기물용 공공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4)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 : 579), 녹색 (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냉 장 고	500 ℥ 이상	9,500	
	300 ℥ 이상	7,100	
	300 ℥ 미만	4,8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6,000	
	12인치 이상	3,600	
세 탁 기		3,600	
에 어 콘	264m ² 형 이상	9,500	
	66m ² 형 이상	6,000	
	66m ² 형 미만	3,6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800	
	높이 1m 미만	2,400	
탈 수 기		2,4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2,400	
장 농	120cm 1쪽	17,900	
	90cm 1쪽	11,900	
서 랍 장	5단 이상	4,800	
	4단 이하	2,400	
신 발 장		2,400	
문 갑		3,600	
화 장 대		3,600	
장 식 장		4,800	
응 접 세 트	장 의 자	6,000	
	의 자	2,400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침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1,900 6,000 17,900 9,500	
캐비넷		4,800	
화일케비넷	4 단 이 상 3 단 이 하	3,600 2,400	
양수책상		8,300	
편수책상		4,800	
피아노		17,900	
올전		4,800	
쌀통		3,600	
난로		2,400	
선풍기	가 정 용	1,800	
자전거	성인 및 아동용(두발) 아 동 용(세발)	3,600 2,400	
유모차		2,400	
퍼스널컴퓨터		4,000	
프린터		3,000	
비디오		3,000	

<주> (1) 기타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당 6,100원 부과

(2) 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품목은 열거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청문기간 및 장소등 특기사항 기재)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폐기물관리법)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 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5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및장소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표의 뒷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서식 갑·을 및 병·정·무를 각각 복사용먹지 부착 인쇄

(을)

(피 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반사실	일 시		내 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5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및장소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병)

(수납은행 보관용)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납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인)

(정)

(납부자통지용)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납부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인)

(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보용)

【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④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고 지 금 액	②취 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청 장 ④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부과 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 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발신 : 영 등 포 구 청 장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 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⑥과태료 금액	
처분 내역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시민보사위원회)

1. 목 적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안전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위원

-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박정자, 이용주, 이정운, 이중식, 전병운, 최락희

3. 방문일정

일 시	대 상	방 문 목 적	비 고
3. 12 (수)	1. 꿈나무어린이집(신길6동 소재) 2. 강남성심병원(대림1동 소재) 3. 대림1동 독서실, 어린이집 4. 정현부페 (대림3동 소재)	1. 보육시설 실태 2. 병원 적출물 분리배출 3. 독서실 운영 실태 4. 음식물쓰레기 분리실태 및 위생상태	
3. 13 (목)	1. 옛맛즉석두부제조업체 (당산1동) 2. 한양식품 (신길1동 소재)	1. 위생상태	
3. 14 (금)	1. 목동 자원회수시설(양천구 목동 소재) 2. 방림방적 (문래1동 소재) 3. MBC방송국 (여의동 소재)	1. 쓰레기 소각시설 2. 고속발효기 실태파악	

4. 주요대상

1) 꿈나무 어린이집 (신길6동 소재)

- 삼성재단의 후원으로 건립되어 우리구 예산지원과 보육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시설과 따뜻한 분위기로 인하여 맛별이 부부들이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있음.
- 앞으로 개원할 어린이집은 이 정도의 시설과 분위기를 갖추어야 할 것임.

2) 강남성심병원 (대림1동 소재)

- 병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적출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적출물은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과 소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상태가 양호함.
- 타 병원에서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견학하고 있으며, 강남성심병원과 같이 판내 타 병원에도 적극 권장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적출물 처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목동 소각장

■ 소각시설

- 처리능력 : 550ton/일
- 현재 소각량 : 298ton/일
- 가동률 : 54%(연 23억 원 이상 운영비 적자)
-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환경건설 위탁 가동)

■ 운영실태

- 양천구 발생 쓰레기를 소각하고도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으나 주민의 반대로 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함. (지방자치 이전에는 우리구 여의도동 쓰레기 부분 소각)
- 주민 반대이유 :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피해 우려 때문이나 현재는 기준치 이하로 판명됨.

■ 검토사항

- 소각시설은 우리구와 안양천을 경계하여 건설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서남풍이 많이 불어 소각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구 쪽으로 날리는 날이 많아 사실상 양천구민보다 우리구민의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구 발생 쓰레기 중 250ton은 목동 소각장이 총 소각용량 500ton 중 실소각량은 300톤을 소각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쓰레기 250톤을 소각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건설 부지를 2~3곳에 마련하여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 의원 발의로 범구민 “목동 소각시설 이용 쓰레기 처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실무 추진 전담반 구성으로 예론조성
- 의장단 및 시민보사위원회의 관계기관 방문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미래의 쓰레기 처리 방향은 자체 소각으로 소각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바, 목동 소각장 이용시 수천억 원의 소각장 건설비용 부담없이 쓰레기 처리 가능

■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

- 우리구에서도 자체의 완벽한 시설의 갖춘 소각장을 건립하고, 또한 소각시설내 인근 주민에게는 편리한 휴식공원조성과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제공함.

4) 음식물 고속 발효기

■ 대상

- (주)방림방적 및 MBC방송국
 - 설치비용 : 3,800 ~ 4,800만
 - 처리용량 : 500kg/일
 - 처리시간 : 2~3일 소요
 - 효과 :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발효시켜 소량의 퇴적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생된 퇴적물은 과수원 등 작물의 비료로 대용하고 있음.
 - 추진방향 : 고속발효기 제작회사를 선정하여 계정 및 세제지원을 하여 대형 음식점 등 관련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5) 두부제조업체

■ 대상

- 옛맛죽석두부 및 한양식품
 - 문제점 : 소규모로 두부를 제조하고 있으며, 비교적 깨끗한 설비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두부 제조 후 폐수를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하고 있으며, 운송시 운반차량 일반트럭을 사용하고 있어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포장 등의 설치가 필요함.